



보육시설 위탁운영 약정서



영유아보육법 제 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0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육군 제8919부대 직장보육시설(이하 무학마을 “어린이집” 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8919부대(이하 “갑”이라 한다)는 대구대학교(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운영을 위탁(영유아보호법 제24조 제3항)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체결의 증명 및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갑”이 “을”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시설) “갑”은 다음 시설의 운영을 “을”에게 위탁하며, “을”은 어린이집 세부운영과정(운영방법, 종사자 임면 등)을 동대학 가정복지학과에 일임하여 운영한다.

① 시설명 : 무학마을 어린이집

② 시설위치 : 경북 경산시 하양읍 무학로 64-12 무학마을

③ 시설규모 : 188.759m²

④ 보육정원 : 36명

제3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3년(재위탁)으로 한다.

② “을”은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 90일 이전에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갑”은 어린이집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을”的 위탁운영을 연장시킬 수 있다. 재위탁기간은 3년이며 “을”이 또 다시 재위탁을 희망한다면 재위탁 종료 90일 이전에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4조(보육대상)

- ① 제8919부대 지역에 주무하는 육군 군인 및 군무원의 자녀 중 취학 전 (만6세 미만) 영유아를 보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기타 보육대상 및 우선순위는 어린이집 운영예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운영방법 및 보육내용)

- ① “을”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어린이집 운영 예규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을”은 보육아동에 대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운영자 선정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을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감”과 “을”은 운영관리에 협의된 지원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⑤ “감”과 “을”은 운영방법과 운영내용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예규에서 정하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다.

제6조(보육료 등)

- ① “을”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보육료를 정부 지원단가 기준으로 징수한다.
- ② “을”은 보육료 이외의 비용을 징수할 경우 “감”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보육시간)

- ① 보육시간은 평일 07:30~19:30으로 하고 평일 연장보육은 22:00까지 한다. 다만, 육군의 하동철기 근무시간, 훈련 등의 부대사정으로 보육시간 변경 또는 연장이 필요하여 “감”이 요청할 경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원한다. 다만, “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이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아동보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보육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을”은 반드시 “감”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종사자 임면)

- ① “을”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를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기타 종사자로 임면하여야 한다.

- ② 어린이집 종사자는 “을”이 임면하되, 원장,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를 임면시 “감”이 선정위원으로 참석하고 그 결과를 “감”에게 통보하여 한다.

제9조(운영비 범위 및 부담)

- ① 운영비의 범위는 보육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② 운영비는 아동의 보호자가 납부하는 보육료와 “감”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 ③ “감”的 보조금은 정부보조금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운영예산은 “을”이 계획하여 “감”과 상호 협의하 집행한다.

제10조(운영비 관리)

- ① “을”은 운영비의 정확한 예산집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 및 보육사업 안내에 규정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제1항의 각종 장부와 경상경비의 지출증빙서류를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급식) 보육아동에게 공급되는 모든 식자재는 원산지가 표기된 국산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통된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시설관리)

- ① “을”은 위탁운영 기간중에 모든 시설물과 기타 재산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있다.
- ② “을”은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를 제외한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회복하여 보육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을”은 “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③ “을”은 “감”的 승인 없이 시설을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위탁사업에 대한 권리의 양도, 대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④ “을”은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련법규 및 “감”的 지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비품 인수인계)

- ① “을”은 최초 설치된 비품에 대하여 시설관리 업체(군인공제 ENC)와 비품 인수인계 한다.
- ② “을”은 “갑”이 제공한 비품에 대하여 별도 비품 인수인계를 하고, 인수받은 비품에 대하여 비품대장에 등록 사용하며, 비품유지 및 관리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

제14조(안전관리)

- ① “을”은 아동의 신체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근 병원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아동 및 종사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산재보험 및 전물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을”이 부담하되 아동의 인명사고 발생에 대한 사항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다. 또한, 시설안전이나 기타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 확인에 대한 의무는 “을”이 책임을 다한다.

제15조(예산회계)

- ① 회계연도는 국가재정법상의 정부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 ②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여 예산내용과 산출기초를 명백히 표기하여야 한다.
- ③ 세입과 세출은 ~~전전한 내용으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을”은 사업계획 및 예산서와 결산서를 “갑”이 요구한 기한내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서식 및 작성방법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어린이집 운영조력) 어린이집 시설이 인가 및 운영될 때까지 “을”은 어린이집 인가 및 운영과 관련한 “갑”的 요청사항에 대하여 조력하여야 한다.

제17조(감독)

- ① “감”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사업장 규정에 의거 운영실태 확인점검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감”의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감”이 지정한 기한내,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정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서면으로 “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약정의 해지)

- ① “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감”에게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 1) “을”이 영유아보호법, 동시행령, 동 시행규칙 및 아동복지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 2) “감”的 정당한 지시 감독 사항을 “을”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였을 경우
 - 3) “을”이 각종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 4) “감” 또는 “을”的 사정에 의거 상호 협약이 있었을 경우
- ② “을”은 “감”이 약정서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감”과 “을”이 협약에 의하여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90일 이전에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약정이 해지된 때에는 “을”은 “감”에게 속하는 시설물 및 기타재산을 지체없이 “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9조(약정의 해석) 이 약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감”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014년 10월 27일



제 8919 부 대 장



준 장

이 정 용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총 장

홍 덕 를

